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9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송옥주·정성호·이병진

한정애 · 문진석 · 이재관

박 정・부승찬・이수진

박해철 • 전용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도지사 또는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외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u>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u> 관 또는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 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 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 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 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 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 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 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 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 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 략)